201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

의 안 번 호	

발의일자 : 2013년 8월 일
발 의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소요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2014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사전 의결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성주2 일반산업단지 지방채발행 : 400억원

○ 기발행 : 300억원(2012년 100억원, 2013년 200억원)

○ 2014년도 지방채발행 : 100억원

- 한도액 : 69억원

3. 참고사항

가. 2014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 : 붙임과 같음

나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- 붙임

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재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

성주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함.

1. 근거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1조

2. 소요사업비 내역 및 재원조달 방안

가. 소요사업비 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이후
계	89,313	10,200	37,229	18,390	23,494
보 상 금	35,859	10,200	25,659		
공 사 비	50,563		10,843	17,152	22,568
부 대 비 용	2,891		727	1,238	926

나. 재원조달 방안 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이후
계	89,313	10,200	37,229	18,390	23,494
국 비	5,650			200	5,450
군 비	43,663	200	17,229	8,190	18,044
지 방 채	**40,000**	**10,000**	**20,000**	**10,000**	

3. 지방채발행 개요

가. 지방채 현액 : 552억원(공공자금관리기금 252, 지역개발기금 300)

나. 2014년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방채발행

- 한도액 : 69억원
- 발행액 : 100억원
- 차입처 : 경상북도(지역개발기금, 이율 연 3.0%)

4. 상환계획

구분	상 환 계 획(백만원)			상 환 재 원(백만원)				
	계	원금	이자	계	국비	도비	시군비 (분양대금)	기타
계	10,300	10,000	300	10,300			10,300	
2015	10,300	10,000	300	10,300			10,300	

5. 기대효과

가. 성주2 일반산업단지조성 재원조달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

나. 적정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화 실현